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498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무과), 02-970-6023

제정 2012. 3. 1. 타 규정개정 2015. 6. 5. 개정 2016. 6. 15. 개정 2019. 11. 28.

제1조(설치)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따라 서울과 학기술대학교에 일반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조(적용 범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 금 부과 사건(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대상)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1. 교수
 - 2. 부교수
 - 3. 조교수
 - 4. 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강사)
 - 5. 조교
 - 6. 대학조교 (개정 2015. 6. 5.)
 - 7. 기금교원
 - 8. 그 밖의 비전임교원

제4조(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인 사람은 제외하다.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본교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 제5조(임기)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① 간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7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교육공무원 징계 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등 의결 요구서로 행하여야 한다.
 - ② 징계등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

계령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문가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제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총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 결을 할 수 있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 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출석통지는 관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

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 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의2(우선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등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다.
 - 1.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 2.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 ② 우선 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우선 심사 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해 심사해야 한다.
- 제11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 또는

-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따라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 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16조(징계등 처분) 총장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비밀 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없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부칙(제13호, 2012. 3.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3호, 2015, 6, 5.)

(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8호, 2019,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은 2019. 5. 27. 이후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우선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 5. 27.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징계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 5. 27.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